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제한규제에 대한 분석

조 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건축력사발전의 주체이지만 착취사회에서는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4권 338폐지)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창조와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은 봉건적인 계급신분관계에 의한 각종 제한과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살림집을 짓고 살수 없었으며 작고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봉건통치배들은 고려왕조를 대신한 저들의 정치적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통치체제를 편성하면서 문무관리들의 벼슬등급을 정1품으로부터 종9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에 높고낮은 수많은 관리들을 배치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게 하면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봉건통치계급에게는 특권이 부여되고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무권리와 빈궁이 강요되였으며 이것은 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그중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는 지배계급에게는 크고 화려한 살림집조건을 보장해주고 인민들에게는 작고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계급적모순을 보다 심화시켰다.

이 글에서는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제한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 시기 살림집에 반영된 착취사회의 반인민적성격과 계급신분관계에 따르는 살림집의 규모에 대 하여 밝혀보려고 한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신분적특권을 리용하여 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살림집을 그 규모와 형식, 집짓기에 리용되는 집재목의 길이에 이르기까지 계급신분적차이에 따르는 엄격한 제한규제를 적용하였으며 인민들에 대한 억 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로 하여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짓기에서는 앞선 시기에 비해 세분화된 국가적 제한규제에 따라 계급신분적차이를 둔 살림집이 지어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집짓기에서 인민들의 창조적활동을 심히 억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는 무엇보다먼저 집의 간수를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계급신분적차이가 나타나게 한것이다.

살림집의 간수에 대한 제한규제는 살림집을 생산활동과 가정생활에 편리하게 짓고 생활하려는 인민들의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을 억제하고 살림집을 통한 착취사회의 계 급적모순을 보다 격화시켰으며 간수가 곧 계급신분관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당시 집의 간수가 품계에 따라 규정된 사실은 옛 문헌자료를 통하여 잘 찾아볼수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대군은 60간중에서 루각이 10간, 친형제, 친아들, 공주는 50간중에서 루각이 8간, 2품이상은 40간중에서 루각이 6간, 3품이하는 30간중에서 루각이 5간, 일반사람들은 10간중에서 루각을 3간으로 규제하고있다.(《세종실록》 권90 22년 신유년 7월 정묘)이와 같은 기록은 《성종실록》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성종실록》에는 우와 같은 규제외에 대군의 집에서 정방, 곁채, 대청침루는 12간으로, 임금의 아들인 여러 군들과 공주의 집에서 곁채 별실은 9간으로, 2품이상 관리의 집과 3품이하의 집에서 곁채는 6간으로 정하고있으며 일반사람들의 집에 대한 규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성종실록》 권95 9년 8월 신해일)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왕대가 바뀌여도 제한규제가 완화되는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규제조치가 세분화되여간것은 살림집의 구체적인 분야에까지 계급신분적차 이를 보다 고착시키려는 봉건통치배들의 정책이 그대로 답습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민들의 살림집부속채에 대한 규제가 없는것은 인민들의 살림집에서 부속채란 생각도 할수 없을 정도로 살림집이 작고 협소하였으며 부속채를 마련할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성립되지 않았기때문에 특별히 그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것으로 보아진다.

여기에서 보이는 살림집의 결채와 대청, 별실들에 대한 규제는 착취계급의 살림집에 만 해당한것이지만 이것이 당시 중앙관청의 하나인 례조에서 량반통치배들의 지나친 살림집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작성한것이라고 볼 때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며 인민들의 살림집은 본채외에 그 어떤 부속건물도 짓지 못하게 하면서도 적은 간수를 가진 집으로 고착시킨 반인민적조치였다.

이에 기초하여 봉건통치배들은 왕대마다 규제하여온 제한조치들을 법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이 조항들을 박아넣었으며 이로 하여 살림집제한규제들은 법적으로 더욱더 고착되게 되였다.(《경국대전》 권6 공전 잡령)

148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이 왕권의 정치적안정과 지배체제의 확립 그리고 인민들에 대한 보다 악착한 수탈과 착취방법을 종합화한 법전으로서여기에 밝힌 살림집제한규제들은 간수에 의한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신분적차이를 명백히하고 품계에 따라 살림집이 지어지고 리용되게 한 반인민적성격을 띠고있었다.

이처럼 간수규제는 당시 사회에서 벌어지고있던 계급신분적차이에 의한 착취와 억압의 교활성과 봉건통치배들의 살림집도 제한한다는 소위 위선적인 행위도 잘 나타내고있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는 다음으로 살림집을 짓는데 리용되는 목재의 길이를 제한하여 집의 규모에 있어서도 착취계급에게는 크고 요란한 집이 차례지 게 하고 인민들은 작고 협소한 집밖에 쓰고 살지 못하게 한것이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목재길이에 대한 규격은 영조척에 의하여 규정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세종실록》에는 살림집목재의 길이와 너비, 높이규정에는 모두 영조척(영조척 1자는 약 29.7cm)을 쓴다는데 대하여 밝히고있다.(《세종실록》 권90 22년 신유년 7월 정묘) 당시 영조척에 따르는 살림집들보의 길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군의 집인 경우 몸채, 곁채, 대청의 안다락집, 안창고에서 매 간의 들보길이는 11 자, 공주와 친형제, 친아들인 경우 몸채, 곁채, 대청의 안다락집, 안창고에서 매 간의 들보 의 길이는 10자, 임금의 집안사람들과 2품이상의 집은 몸채, 곁채, 대청의 안다락집, 안창고들의 매 간 들보의 길이가 9자, 일반사람들의 집은 8자로 하였다.(《세종실록》 권123 31년 기사년 봄 정월초하루 정미)

이것은 살림집들보의 길이가 326.7cm, 297cm, 267.3cm, 237.6cm로 규정되여 살림집 짓기에 리용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봉건통치배들은 1478년에도 살림집의 들보를 비롯한 집재목들에 대한 규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새로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대군의 집은 몸채, 결채, 대청에 대하여 과량들보의 길이를 20자, 척량들보의 길이는 11자, 다락기둥의 길이는 15자로 정하고있으며 그 나머지간각기둥들의 길이는 9자, 들보와 척량들보의 길이는 각각 10자로 규제하였고 임금의 아들인 여러 군들과 공주의 집은 몸채, 결채, 별실에 대하여 과량들보의 길이는 19자, 척량들보의 길이 10자, 다락기둥의 길이 14자, 그 나머지간각기둥들의 길이와 들보길이는 각각 9자, 척량들보의 길이는 10자이며 2품이상 관리들의 집은 과량들보의길이 18자, 척량들보의길이 10자, 다락기둥의길이 13자, 나머지간각기둥들의길이와들보의길이는 각각 8자, 척량들보의길이는 9자로 하였다. 이와 반면에일반사람들의살림집은 다락기둥의길이가 11자이고 그 나머지간각기둥들에 한하여 8자, 척량들보의길이 9자로 규제하였다.(《성종실록》권959년 무술년 8월신해)

이것은 과량들보인 경우 들보길이는 594cm, 564.3cm, 534.6cm, 척량들보인 경우 그길이는 326.7cm, 297cm, 267.3cm, 다락기둥의 길이는 445.5cm, 415.8cm, 386.1cm, 간각기둥들에 한해서는 267.3cm, 237.6cm, 높은 기둥은 386.1cm, 356.4cm, 326.7cm로 정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1품에 해당되는 착취계급과 일반인민들의 살림집에서 들보의 길이는 그 차이가 89.1cm, 과량들보는 59.4cm, 척량들보는 59.4cm, 다락기둥은 59.4cm, 간각기둥은 29.7cm, 높은 기둥은 59.4cm에 해당되는 차이가 생기게 되였으며 품계에 따라가면서 줄임을 주어 각 품계에 맞는 착취계급의 살림집이 외형상 나타나도록 되여있었다.

이렇게 계급신분적차이에 따라 기둥과 들보의 길이가 규정됨으로써 착취계급들이 쓰고 사는 큰 집과는 달리 인민들은 적은 간수에서 극히 제한된 집재목을 가지고 작은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되였으며 그것마저도 갖출수 없는 집 아닌 집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는 다음으로 살림방의 크기와 장식에서 도 계급신분적차이가 나타나게 한것이다.

그것을 보면 살림집의 간수사이에 대한 규모를 공주이상은 본채와 곁채의 방들보길이를 10자(29.7cm), 마루대길이를 11자(326.7cm), 기둥높이를 13자(386.1cm)로 하고 그나머지건물들에 한해서는 들보길이를 8자(237.6cm), 마루대길이를 9자(267.3cm), 기둥높이를 7자5치(222.7cm)로 규정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세종실록》 권122 30년 무진년 12월초하루 병인)

또한 친형제, 친아들, 공주에 대하여서는 사랑방과 행랑방의 길이를 9자(267.3cm), 너비 8자5치(252.45cm), 기둥은 8자5치(252.45cm)로 하였으며 임금의 집안사람들과 2품이상의 집은 매 간에 대하여 길이 9자(267.3cm), 너비는 퇴까지 합하여 16자(475.2cm)로 하고있으며 사랑방과 행랑방은 길이 8자5치(252.45cm), 너비는 8자(237.6cm), 기둥은 8자(237.6cm)로 하고 일반사람들에 대해서는 매 간의 길이를 8자(237.6cm), 너비는 7자5치(222.75cm),

기둥은 7자5치(222.75cm)로 규정하고있는것은 방의 규모를 정하는데서 계급신분적차이를 두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세종실록》권123 31년 기사년 봄 정월초하루 정미)

이렇게 살림방의 길이와 너비, 높이까지 규제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살림집은 앞서 규제된 작은 집에서 방까지도 그 크기가 제한된 작은 집에 머물게 하였으며 살림집이 인 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출수 없게 하였다.

살림집의 규모뿐아니라 집의 장식에서도 세부적인 제한규제가 적용되였다.

그것을 보면 일반사람은 다듬은 돌, 꽃무늬의 두공이나 풀잎사귀무늬의 두공(살림집에서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면서 그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살림집의 채양을 달지 못하게 규제하고있다.(《경국대전》 권6 공전 잡형)

이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조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범위를 장식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적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살림집에 적용된 제한규제들은 앞선 시기 살림집들에 적용된 규제보다 더 가혹 한것이였으며 생활의 보금자리가 계급신분적차이를 두는 하나의 징표로 되게 한 반인민 적조치였다.

삼국시기 살림집에 적용된 제한규제들을 보면 왕족들은 방의 길이와 너비를 24자로 규정하고있으며 6두품은 21자, 5두품은 18자, 일반인민들의 살림집은 15자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인민들의 살림집에는 느릅나무재목을 쓰지 못하며 무늬있는 천반을 하지 못하며 당기와를 잇지 못하며 수두와 부연, 덧보, 조각한 도리받침, 현어를 가설하지 못하며 금, 은, 황동, 구리, 백랍 등으로 장식하지 못하며 충계와 섬돌에 산돌을 쓰지 못하며 담장높이는 6자를 넘기지 못하며 거기에 들보를 얹지도 못하며 석회를 바르지 못하며 대문과 사방으로 문을 내지 못하며 마구간에는 말 2필을 두게 한다고 전하고있다.(《삼국사기》 권33 잡지 가옥)

이것을 보면 앞선 시기 살림집들도 역시 일정한 제한규제를 받았으나 집의 규모와 크기에 있어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컸으며 집의 크기가 계급신분적차이를 나타낼수 있도록 3자 줄임으로 그 차이를 나타냈지만 집재목의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제에서 장식면에 많이 치우치면서 살림집의 형태와 규모, 장식이 하나로 결합되여 계급신분적차이가 나타나도록 하였지만 무늬장식까지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간수와 방의 규모, 집재목의 크기, 별실과 다락, 행랑방과 사랑방, 무늬장식에 이르기까지 구체화된 살림집제한규제는 당시 살림집에 대한 제한규정이 더욱더 세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나아가서 법적으로까지 고착된 반인민 적규제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특히 앞선 시기보다 집의 규모가 절반정도로 줄어들고 그것마저도 살림집의 구체적인 세부에까지 제한조치가 취해져 인민들의 살림집은 숨막히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되게 하였으며 집 아닌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게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이렇게 작은 집에 대해서도 자기들의 특권적지위가 살림집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였다.

실례로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살림집에서 집의 간수뿐아니라 척량들보의 길이도 11자: 9자, 기둥높이는 13자: 7자, 방의 길이는 11자: 8자, 방의 너비는 9자5치: 7자5치

로 그 차이를 두고 착취계급과 인민들간의 계급신분적차이가 나타나게 하였으며 다락이설치되는 경우 다락높이의 차이는 18자:12자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다락집만 보아도 봉건통치계급의 살림집다락기둥은 14자로서 다락집과 높이차이는 4자이며 이것은 곧 다락지붕의 높이로 된다. 반면에 일반인민들의 다락집은 다락기둥이 11자로서 다락집과 높이차이는 1자이다.

이것은 착취계급의 살림집지붕높이가 4자(118.8cm)인 반면에 인민들의 집은 1자(29.7cm)밖에 안되는것으로서 일반인민들의 살림집은 작고 초라한 형태를 띠고있었으며 신분에 따르는 차이가 그 이전시기보다 세분화되고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고 삼국시기 신라의 가장 높은 급인 진골의 살림집에서는 방의 길이가 24자이고 일반인민들의 방길이는 15자로 규정하고있으나 살림집의 간수와 세분화된 목재의 길이에 서까지 제한규제는 설정되여있지 않았다고 볼 때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의 본채는 물론 결채, 안창고와 매 방의 길이, 너비를 앞뒤로 놓은 퇴마루, 퇴의 기둥, 사랑방, 행랑방의 길이, 너비, 기둥높이 등 살림집의 크기와 목재에 대한 규제조치를 보다 세분화한것은 봉건적인 착취사회제도를 신분제도에 의한 사회로 공고화하고 인민들을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에 빠지게 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보다 강화하려는 반동적통치배들의 책동이 강화되여갔다는것을 보여준다.

결국 근로인민대중은 살림집창조와 발전의 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살림집이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규제된 살림집제한조치에 따라 규 모가 작고 추녀가 낮은 살림집을 짓고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리므로 당시 살림집의 형 태와 방배치만 보아도 계급신분적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게 되여있었고 인민들은 억압과 수모를 받으면서 생활하였다.

이처럼 조선봉건왕조전반기 살림집에 적용된 제한규제는 봉건통치배들이 저들의 봉 건적인 특권을 합법화하고 인민대중에 대한 신분적예속과 억압을 강화하기 위한것으로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령역에까지 계급신분적차이를 두고 인민들을 예속시킨 극히 반인 민적규제조치였다.

실마리어 루각, 대청